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8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안 제25조의2 신설)	2
2. 개정안 부칙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12.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안 제25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의 영리 추구 목적 거래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시키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생활기록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 자료(학교생활기록)를 열거하면서 학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¹⁾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

[학생생활기록 및 기재내용]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학교정보:** 학생의 재학 중 학년, 반, 번호 및 담임 교원의 성명 등
 - 2)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수 중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등위, 수상시기 및 수여기관 등
 - 3)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
 - 4) **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중에 읽은 책의 제목 및 저자 등
 - 5)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 학생이 자유학기 중에 실시한 자유학기활동 결과
 -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7)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중 의사소통, 자립생활, 생활적응, 신체 및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 학교생활기록은 학적사항, 출결사항 및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각종 교육활동을 기재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기록으로 학생지도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

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불어 대학입시전형 중 학생부 중심의 수시(隨時) 선발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제공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²⁾³⁾, 제공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은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를 받은 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⁴⁾,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3) 교육부는 본 조항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제공은 일반적으로 자료 요청 기관(법원, 감사원, 국가데이터처, 국회 등)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후, 활용 목적·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협조·동의를 통해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생활기록 제공 사유]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다만, 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의 제공 금지 의무 및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학교장 및 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제공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학생이 민원서류로써 학교생활기록부를 취득한 후 거래하는 것과 같이 학생이 본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처벌조항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임.

□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핵심이 되는 전형자료로⁶⁾,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매매행위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므로⁷⁾, 학교생활기록의 영리 목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6) 김재훈, 대학입시 학교생활기록부 생성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의식 고찰, 융합교육연구 제9권 2호, p82

7) "고3 수시 대비용 의대생 학생부 팝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서 성행, 뉴스1, 2024.05.19.
"서울대 의대 학생부는 10만원" 고3 수시 대비용 학생부 중고 거래 성행, 인사이드, 2024.05.19.

적 거래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의 영리목적 거래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경우에만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형벌규정의 체계정당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임⁸⁾.

□ 학생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한 학원 등의 경우 취득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⁹⁾,

- 상기 언급한 기사에서는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수험생과 대학생의 고등학교 학생부 거래가 활성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8)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763

9) 학원, 사교육 업체 등에 대해 구성요건 충족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또는 제72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본인의 학교생활기록을 판매한 학생의 경우 「형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¹⁰⁾, 「초·중등교육법」상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학교생활 기록의 영리 목적 거래 및 상업적 이용 금지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고 대입 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민간의 학생부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임¹¹⁾.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10)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해야 정범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생활기록을 제공하는 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범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공범 요건에 해당해야 함.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별하지 아니한다.

- 11) 교육부는 금지 조항만으로도 충분한 입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생부 매매 행위 관련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¹²⁾,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 개정안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개정안을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포 후 국민에게 법률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12)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p 828~829

1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통상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임¹⁴⁾.

문 의 처
02)6788-5186

1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p 821